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2년 3월 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2022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II.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기금

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하여 평창군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체육지원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식품진흥기금

2021년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을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기금운용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 금 명	계획액	기정계획액	비교증감
합 계(7건)	9,658,364	9,303,910	354,45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79,541	979,541	0
평창군자활기금	250,562	250,562	
체육진흥기금	2,211,088	1,856,634	354,454
식품진흥기금	169,837	169,837	0
재난관리기금	1,876,996	1,876,996	0
옥외광고발전기금	139,543	139,543	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030,797	4,030,797	0

Ⅲ. 기금변경 개요

□ 기금조성규모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과 개별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2년도말 기금조성계획액은 12,849백만원 임.

[단위:천원]

기 금 명	계획액	기정계획액	비교증감
합 계(7건)	12,849,206	13,242,849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07,902	4,607,902	0
평창군자활기금	220,562	220,562	
체육진흥기금	2,644,088	3,011,634	△367,546
식품진흥기금	113,318	139,415	0
재난관리기금	676,996	676,996	0
옥외광고발전기금	139,543	139,543	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446,797	4,446,797	0

Ⅳ. 검토결과

가. 기금운용 변경계획(총괄)

- 수입·지출계획은 9,65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4백만원 증가
 - 수입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154백만원 및 전입금 200백만원 증가

- 지출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치금 368백만원 감액 및 비용자성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비로 72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치금을 감액하여 비용자성사업비 7백만원 및 기타지출 19백만원을 증액하였음.

<기금운용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획액		기 정		증감	
	계획액	구성비	계획액	구성비	증감	증감률
총 계	9,658,364	100.00%	9,303,910	100.00%	354,454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79,541	10.14%	979,541	10.53%	0	0.00%
평창군자활기금	250,562	2.60%	250,562	2.69%	0	0.00%
체육진흥기금	2,211,088	22.89%	1,856,634	19.96%	354,454	19.09%
식품진흥기금	169,837	1.76%	169,837	1.83%	0	0.00%
재난관리기금	1,876,996	19.44%	1,876,996	20.17%	0	0.00%
육외광고발전기금	139,543	1.44%	139,543	1.50%	0	0.00%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030,797	41.73%	4,030,797	43.32%	0	0.00%

나. 기금별 변경내역

□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교육체육과)

- 수입·지출계획은 2,21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4백만원 증가
 - ▶ 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154백만원 및 전입금 200백만원 증가
 - ▶ 지출은 예치금 368백만원 감액하여 체육진흥사업 “평창 평화장사 씨름대회” 등 16개 사업비에 72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체육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2,211,088	1,856,634	354,454	합 계	2,211,088	1,856,634	354,454
전 입 금	700,000	500,000	200,000	비용자성 사업비	1,567,000	845,000	722,000
예탁금 회수	805,290	805,290	0	기본경비	0	0	0
예치금 회수	682,255	527,801	154,454	예탁금	0	0	0
이자수입	23,543	23,543	0	예치금	644,088	1,011,634	△367,546

□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환경위생과)

○ 수입·지출계획은 170백만원으로 기정대비 변동없음

- ▶ 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 ▶ 지출은 예치금 26백만원 감액하여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에 7백만원 2021년도 도비반환금에 19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69,837	169,837	0	합 계	169,837	169,837	0
보 조 금	18,800	18,800	0	비용자성 사업비	37,222	30,422	6,800
예탁금 회수	26,250	26,250	0	기본경비	0	0	0
예치금 회수	116,000	116,000	0	예탁금	0	0	0
이자수입	787	787	0	예치금	113,318	139,415	△26,097
기타수입	8,000	8,000	0	기타지출	19,297	0	19,297

다. 검토의견

-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나,
-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20년 이후 비융자성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의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매년 감소하여 조성목표액 50억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 규제와 보조금심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 (단위:천원)	체육진흥 사업비 지출계획액	연도말 조성액	일반회계 체육대회 개최지원
2020년	340,000	4,096,341	822,400
2021년	1,138,000	3,487,545	493,000
2022년	1,567,000	2,644,088	282,00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